

# 건축물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사전 안내문



주차장법에 의해 차량의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물 연면적 및 용도에 따라 일정한 수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부설주차장이라 합니다.

제주시에서는 주차장 기능 유지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설주차장에 대해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 이에 조사원이 방문하여 시민들께서는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**조사기간** 2025년 3월~5월(3개월)

**조사지역** 제주시 동지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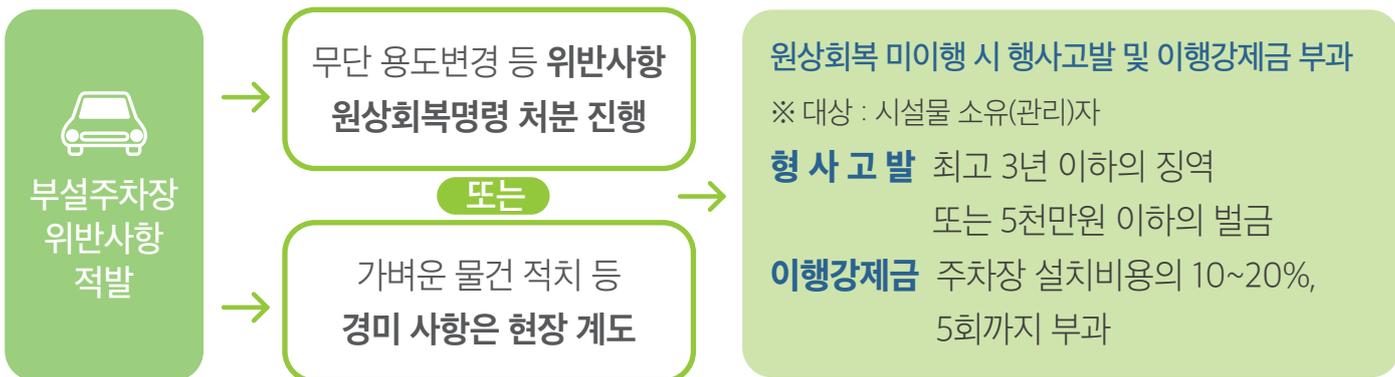
**조사방법** 부설주차장 현장 확인 및 위반사항 파악(건축물대장 도면 기준)

**위반사항**

- 무단 용도변경** 주차구획 위 증축·조경(화단) 설치 등 불법 용도 사용
- 물건 적치** 냉난방 장치, 컨테이너, 가스통, 물품 대량 적재 등 고정물 설치
- 출입구 폐쇄** 담장·조경(화단) 설치로 인한 차량 진출입(건축 필지 내) 불가
- 임의변경** 주차구획선 임의 변경(건축물대장 도면상 주차장 위치 불일치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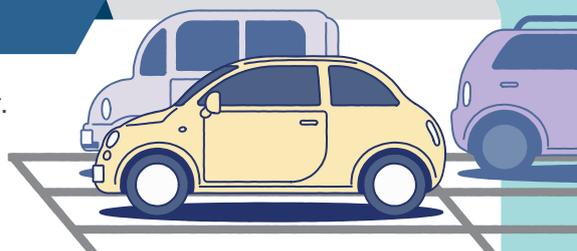
## 부설주차장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사항

주차장법 제19조의 4, 제29조, 제32조



## 시민 협조사항

- 조사를 위해 주차장 출입 및 사진 촬영을 할 예정이오니 협조바랍니다.
- 부설주차장 위반사항은 즉시 원상회복 조치 바랍니다.
- 물건 이동 등 경미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 예정입니다.



# 주차장법 주요 위반행위(사례)

**무단 용도변경** 부설주차장 위치에 창고 설치로 타용도 사용에 해당

원상회복 전 (위반)



원상회복 완료



**출입구 폐쇄**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담장 설치 증, 차량 출입 불가

원상회복 전 (위반)



원상회복 완료



**물건 적치** 부설주차장 위치에 물건 적치로 인한 주차 불가

원상회복 전 (위반)



원상회복 완료



**임의 변경** 건축물대장 도면상의 주차장 위치와 실제 현장에서의 주차장 위치가 불일치 부설 주차장 위치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는 차량관리과로 반드시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 (변경 도면 필요)

